

황남기 경찰합격 회원제반 경찰학 1순환 모의고사 1회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 ① [x]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는 경찰의 개념에서 개별적 국가활동이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우선 경찰로부터 외무행정 재무행정 군사행정이 분리되었고 이어서 통치개념이 독립한 후에 끝으로 사법행정이 독립하게 된다(경찰행정법 서정범 세창출판사 15면)
- ② [x]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또는 개개의 구성원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직이 경찰이다라고 규정하였고 이러한 경찰권력의 축소개념은 1795년 프로이센 복무규정과 1802년 프로이센 행정명령에서 명시적으로 폐지되었다(경찰행정법 서정범 세창출판사 17면)
- ③ [O] 1882년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전승기념비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베를린 경찰서장의 명령은 위험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1794년의 프로이센 란트법의 규정에 맞게끔 경찰의 권한을 소극적인 위험방지분야로 한정하였다.
- ④ [X]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 이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여 **1882년 크로이쯔베르크 판결** 입장을 반영한 대표적인 입법이다(경찰행정법 서정범 세창출판사 19면)

2. [정답] ①

이러한 Pütter의 주장은 복지증진을 위한 경찰의 권한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란 근대적 법규의 성립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출처 : 경찰행정법 서정범 세창출판사 16면]

3. [정답] ③

- ㉠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내용 ㉡ 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의 내용 ㉢ 1829년 수도경찰법 ㉣ 1882년 크로이쯔베르크 판결 ㉤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97조 ㉥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 ㉦ 행정경찰을 공공유지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과 체포를 목적으로 한다는 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의 내용이다

- ㉧ 1882년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전승기념비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베를린 경찰서장의 명령은 위험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1794년의 프로이센 란트법의 규정에 맞게끔 경찰의 권한을 소극적인 위험방지분야로 한정하였다.
- ㉨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 이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의 내용이다.
- ㉩ 공공의 평온,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또는 개개의 구성원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직이 경찰이다는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내용
- ㉪ 1829년 로버트 필 경은 "앵글로 색슨의 전통적인 공동체 치안원칙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내세 수도경찰법을 제정하였다.
- ㉫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97조에서 "지자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따라서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는 여전히 경찰직무에 포함되었다.

4. [정답] ③

- ㉬. [x], ㉭. [O]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즉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사후에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경찰은 소극목적적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적극목적적인 행정작용인 복리행정(급부행정·규제행정 등)과 구분되고, 또 사회목적적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국가목적적 행정작용인 외무행정·군사행정·재무행정과 구분된다.
- ㉮. [O] : 경찰은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해제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작용이다. 즉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서, 경찰하명·경찰허가·경찰강제 등의 권력적 수단이 주로 이용된다. 따라서 경찰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 중심이 되는 복리행정과 기본적으로 구분된다.
- ㉯. [x] : **사법경찰**이란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작용을 말하는데, 이는 형사사법작용의 일부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에는 해당하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아니다. 실질적 의미의 사법작용이다.
- ㉺. [O] : 무허가음식점에 대한 영업의 금지, 침수지역에 대하여 출입금지를 명하는 행위, 풍기문란행위의 단속,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제거, 산불의 예방·진화 등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ㄴ. [X]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경찰작용의 실질적인 성질을 불문하고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입법자가 경찰에 부여한 모든 사무를 의미하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5. [정답] ②

② [O] : 범죄의 수사과 범인의 체포, 대간첩작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작용인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경찰작용이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경찰작용이 아니라 사법작용이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행정경찰	사법경찰
의미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작용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대간첩작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작용
성질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으로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	형사사법작용의 일부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이 아니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임
소관기관	경찰청장과 각 주무부장관	검찰총장
적용법규	행정법규	「형사소송법」

- ① [X], ③ [X] : 풍기문란행위의 단속, 교통단속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인 행정경찰에 속한다.
- ④ [X], ⑤ [X] :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인 행정경찰에 속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 행정경찰>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의미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연계)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작용
소관기관	보통경찰기관(경찰청장)(최고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	각 주무부장관 및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등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예	① 집회·결사·대중운동에 관한 경찰, ② 언론·출판에 관한 경찰, ③ 교통경찰, ④ 윤락행위나 도박 등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풍속경찰, ⑤ 영업경찰, ⑥ 소방경찰, ⑦ 해양경찰, ⑧ 범죄의 예방·제지, ⑨ 요인경호	① 위생(보건)경찰, ② 마약경찰, ③ 산림경찰, ④ 산업경찰, ⑤ 어업경찰, ⑥ 조세경찰, ⑦ 관세경찰, ⑧ 건축경찰, ⑨ 노동경찰, ⑩ 도로경찰, ⑪ 철도경찰, ⑫ 공물경찰, ⑬ 문화경찰, ⑭ 자치경찰

6. [정답] ②

① [X]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 를 규정한 것은 1794년 독일일반관트법이다. 문제에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1931년 제정된 법이다.**

- ㉠ [X]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되었다.
- ㉡ [O]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은 경찰의 임무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이에 비해 영미계는 보완적 관계로 이해했다.
- ㉢ [O] 수사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생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7. [정답] ②

경찰제도를 두 가지로 구별해 보면 첫째는 (행정경찰)이요, 둘째는 (사법경찰)이다. (행정경찰)은 적당한 조치를 취해서 재앙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 (사법경찰)은 이미 죄지는 범인을 수색하거나 체포해서 국민들의 환난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 ... 비유 하나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남의집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할 때 이를 막는 것은 (행정경찰)이고, 그가 한 발이라도 울타리 위로 넘어가면 무고히 남의 집에 침입하는 잡범이니 (사법경찰)의 직분에 귀속되며 형법의 처단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실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표리관계를 이루는 셈이다. [출처 : 경찰행정법 서정범 세창출판사 24면]

8. [정답] ②

- ㉠ [O] 보통경찰기관인 경찰청에서 행정경찰도 담당하지만 수사나 범죄인체포도 담당하므로 사법경찰도 담당하고 있다.
- ㉡ [X]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경찰행정상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작용이다. 범죄의 수사, 피의자 체포,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 사살,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고 있는 정신착란자 보호조치가 있다. 문제 지문에서 청포 화약류 취급제한은 예방경찰의 내용이다. 이밖에 경찰관의 순찰활동,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 보호조치는 예방경찰 작용이다.
- ㉢ [O]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나눌 수 있다. 봉사경찰은 강제력이 아닌 비권력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경찰이다.
- ㉣ [X]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

이라고 한다. 보안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연계)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이다.

㉞ [X]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보호되는 법익에 따른 분류이다. 원래 고등경찰은 사회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종교 사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 단속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국가기관과 제도를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㉟ [X] 권한의 책임과 소재에 따라 구분한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다.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이다.

보안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연계)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이며,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된다.

㊸ [X]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담당하는 작용인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인 행정경찰은 일반행정기관도 담당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할 수 없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 사법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로는 행정경찰이 아니고 사법작용이다.

9. [정답] ①

① [O], ② [X] :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사후에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경찰은 소극목적적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적극목적적인 행정작용인 복리행정(급부행정·규제행정 등)과 구분된다.

③ [X] : 경찰행정을 질서행정이라고도 한다. 일반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질서행정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

④ [X] :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인 점에서, 비권력적 행정작용이 중심이 되는 복리행정과 기본적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경찰은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작용인 점에서, 법률상의 능력이나 권리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와 구분된다.

10. [정답] ①

① [X] 누군가가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였다면, 그는 공공의 질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경찰이 헌법상의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화의 상영을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금지할 수는 없다.

[출처 : 경찰행정법 서정범 세창출판사 98면]

② [O] 비키니를 입는 것이 사육제(謝肉祭, Carnival) 기간 중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종교적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참석자의 감정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공공의 질서에 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출처 : 경찰행정법 서정범 세창출판사 98면]

③ [O] 장소적 구속성의 문제는 같은 도시나 농촌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즉, 같은 도시 안에서도 폭력적 영화의 선전에 대한 가치판단은 환락가에서와 유치원 주변구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예가 된다. [출처 : 경찰행정법 서정범 세창출판사 98면]

④ [O] 독일의 뮌스터 상급행정법원이 극우주의자들이 독일 제3제국의 깃발을 나치즘의 고양을 위한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을(예컨대 촛불행진을 할 때 전쟁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사한 것은(OVG Minster, 1994, 966)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출처 : 경찰행정법 서정범 세창출판사 98면]

11. [정답] ①

① [X] 오상위험이다. 혐의가 없는데 위험을 잘못 추정한 경우이다. [출처 : 김창윤외27인 공저 경찰학. 박영사 51면]

② [O] 오상위험은 경찰법적으로 인정되는 위험이 아니다. 따라서 경찰의 활동영역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오상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행해진 조치는 위법하게 된다. [출처 : 김창윤외27인 공저 경찰학. 박영사 52면]

③ [O] 선지 사례는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오상위험이다. [출처 : 김창윤외27인 공저 경찰학. 박영사 52면]

위험에 대한 인식	
위험혐의	㉠ 위험에 대한 우려 또는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 ㉡ 위험의 존재가 불확실함을 경찰관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 ㉢ 위험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가능(ex. 항공기 내의 폭발물 설치여부 조사)
외관상 위험	㉠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위험이 존재한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 실제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지만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발동은 원칙적으로 적법 ㉣ 객관적 사실(O)+주관적 착오(X)
오상위험	㉠ 위험의 외관위험혐의도 없는데 위험을 잘못 추정한 경우 ㉡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인정 ㉢ 오상위험 상황에서 경찰개입 시 손해배상의 문제 발생 ㉣ 객관적 사실(X)+주관적 착오(O)

④ [O] 독일의 경우, 오상위험의 사례는 손실보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인정된다. [출처 : 김창윤외 27인 공저 경찰학. 박영사 52면]

12. [정답] ①

- ① [O] : 경찰작용은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침해행정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그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법적 근거**라 함은 원칙적으로 국회에 의해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가리키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법규명령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도로법」 등의 **개별 법령상의 근거**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경찰작용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원칙이고, 개별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게 된다. 그러나 **관습법은 침해적인 경찰작용을 발동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② [X] : 임무규범(직무규범)은 행정청 간의 임무범위의 한계를 정하기 위해 설정된 조직법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임무의 수행을 위한 사인의 권리침해를 정당화하는 근거규범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권력적 경찰작용은 조직법적 근거만으로는 발동할 수 없고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발동할 수 있다.** 즉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한 근거법규는 조직법상의 임무규범이 아니라 작용법적 권한규범이다.
- ③ [X] : 전통적으로 경찰작용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 중심이었으나, 오늘날은 경찰지도(예**

컨대 계몽·지도·권고·주의촉구 등)나 경찰서비스(예컨대 교통정보의 제공·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 등과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중시되고 있다.**

- ④ [X] : 경찰행정작용의 개별적 내용에 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율(제3조~제10조의4)**하고 있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작용의 일반법이므로 특별법 규정이 없는 경우 보충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

13. [정답] ②

- ① [X]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개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특별규정인 표준조치를 보충하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된다.
- ② [O] 사법경찰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는 형사소송법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경찰상 긴급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된다.
- ③ [X]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서울광장의 통행제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의 **별률적 근거가 된다는 것은 반대의견의 주장이었다.** 보충의견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 :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찰권 행사를 위한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일반조항을 인정하더라도 경찰권 발동에 관한 조리상의 원칙이나 법원의 통제에 의해 그 남용이 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경찰 임무의 하나로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한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일반적 수권조항으로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들에 근거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1.6.30. 2009헌마406).

- ④ [X]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 있는 중요한 법규적 사항은 최소한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 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이 사건 대통령령 등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살수차를 이용한 혼합살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 역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8.5.31. 2015헌마476).

14. [정답] ②

- ① [O]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의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경찰권 발동의 **개괄적 수권조항**이라고 봄이 다수설이다.
- ② [X] :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

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터이므로, 군(郡)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대판 1986.1.28. 85도2448).
 ⇨ 「청원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를 근거로 하는 것이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 ③ [O] : 대법원 판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의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경찰권 행사의 근거규정으로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개괄조항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86.1.28. 85도2448, 85감도356 참조).
- ④ [O] :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종대, 송두환의 보충의견> 경찰의 임무 또는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일반적 수권조항'이라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제한 또는 박탈하는 행위의 근거조항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위 조항 역시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를 위한 통행을 제지하는 행위 발동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6.30. 2009헌마406).

15. [정답] ④

- ① [X] : 위해에는 위험과 장애가 포함된다. 그 중 '위험'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고, '장애'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실현되어 손해가 이미 발생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험의 방지는 예방의 성격을 가지고, 장애의 제거는 진압의 성격을 갖는다.
- ② [X] : 개괄조항은 경찰 본래의 위험방지와 장애제거의 임무영역에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개괄조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보안경찰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법경찰이나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X] : '위험의 혐의'란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손해발생에 대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찰은 직접 경찰권을 발동할 수는 없고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이전에 예방적으로 위험에 대한 조사·확인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O] : 개괄조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표준조치(제3조 이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인에 대하여 개괄조항을 근거로 신체를 검사하는 것(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참조)은 허용되지 않는다.

16. [정답] ④

- ① [O] 경찰 사물관할이란 경찰행정관청이 광의의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의 사물관할 범위를 넘는 영역 예컨대,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경찰행정관청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O] 경찰의 사물관할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와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경찰이 범죄수사 임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출처 : 임창호, 정세종, 라광현 최신경찰학 도서출판 자운 41면)..
- ③ [O] 경찰행정관청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광의의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출처 : 임창호, 정세종, 라광현 최신경찰학 도서출판 자운 41면).
- ④ [X] 대한민국 경찰은 외국의 원수 및 외교사절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외교사절의 특권으로 인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고, 공무집행 중인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하여 제1차적 재판권이 미군 당국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경찰은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다. (출처 : 임창호, 정세종, 라광현 최신경찰학 도서출판 자운 41면).

17. [정답] ④

- ㉠ [X]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업무분장에 따른 경찰들이 하는 모든 업무를 포괄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업무분장에 구애되지 않은, 업무의 성질에 기반한 구분으로서 경찰 조직에 구애받지 않는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범주를 구별할 수 없다.
- ㉡ [X]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는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한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의 시점에 따른 분류이다. 예방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경찰행정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가 해당된다.
- ㉢ [X] 국가경찰제도가 자치경찰제도보다 더 관료화 될 위험이 크다.

- ㉔ [X] 국가경찰제도는 경찰작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수행되므로 경찰업무집행의 통일을 기할 수 있으나, 정부의 특정정책 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 ㉕ [O] 형식적 경찰기관은 형식적 업무분장에 따른 경찰기관이다.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실질적 경찰개념을 의미한다.
- ㉖ [X] 정보경찰의 활동은 국민에 대한 명령적인 경찰작용이 아니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그러나 보통경찰기관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18. [정답] ④

- ① [X] 「도로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위험방지의 내용이다.
- ② [X] 경찰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기초를 둔 행정작용이다. 따라서 일반통치권에 복종해야 하는 자연인·법인, 내국인·외국인은 모두 경찰권에 복종해야 한다.
- ③ [X]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법질서의 불가침성'이다.
- ④ [O] 불문 영역이 성문화되면서 공공의 질서는 축소되고 공공의 안녕은 확대되고 있다.

19. [정답] ③

- ① [X], ② [X] : 공공의 안녕이란 국가의 법질서(성문의 법규범)와 공공시설 및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자유·명예 등에 대해 어떠한 침해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의 안녕은 객관적인 법질서의 유지, 국가의 존속과 그 기관의 시설 및 기능의 보호, 개인의 권리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공공의 질서란 지배적인 사회의 가치관·윤리관에 비추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불가결의 전제조건이라고 간주되는 불문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의 질서는 사회공동체의 윤리·도덕을 대상으로 할 뿐이고, 성문의 법규범은 공공의 안녕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외된다.
- ③ [O] : 경찰관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위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경찰권을 발동하였으나 이후에 실제로는 이러한 위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예컨대 순찰 중인 경찰관이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듣고 타인의 집에 들어갔으나 TV에 방영된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판명된 경우)를 '외관적 위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 있으므로 이를 제거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발동된 경찰권의 행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 ④ [X] : 위험이 존재하느냐 여부는 경찰권발동의 요건이다. 요건에는 재량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위험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에는 재량이 아니라 판단의 여지의 존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즉 경찰상 판단의

여지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20. [정답] ②

- ① [X] : 경찰조직은 민주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경찰의 관리와 운영을 보장하고, 경찰임무를 능률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불평부당 및 공평을 요하는 경찰의 본질상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필요로 한다. 엽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에 따른 인사를 원칙으로 한다.
- ② [O] : 경찰법규는 오직 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근거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경찰권 발동의 정도나 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즉 경찰법규는 대부분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경찰권 발동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경찰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경찰편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다. 다만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에 의해 경찰권 발동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③ [X] : 의원경찰(議院警察)이란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거나 방청인 그 밖에 국회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명령·강제하는 작용을 말하고, 법정경찰이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권력작용, 즉 재판의 진행 도중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방해하지 않도록 명령·강제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원경찰과 법정경찰은 명칭상 경찰로 불리고 있으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경찰작용이 아니다.
- ④ [X] : 「국회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